

의안번호 제1호

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9. 2.13.

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1호 제출연월일: 2019. 2. 13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□ 「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」제2조에 따른 출연금을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(제1회 추경)에 편성하고자 「지방 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한국지역진흥재단 현황】

- O 연혁: 2007. 8. 23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· 기초자치 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
- 기능: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.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·관광 홍보, 특산품 마케팅 지원,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
-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-6 상영빌딩 4층

□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배경

- 2007. 8. 23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·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
 - 논산시 출연금 지원(2007 ~ 2015 / 9년간): 67,500천원 / 연7,500천원
- O 지방재정법 개정(2016. 1. 1 시행)으로 출연근거 소멸
 - 2016 ~ 2017년도 미출연
 - ※ 공공기관에 대하여 <u>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가능</u>

- O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원조례 제정 및 출연금 납부 요청(2017. 9.)
 - 재단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진흥업무 효율적 수행필요
- 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(2018. 3.) 및 2018년 출연금 지원(8,250천원/2018. 4.)

□ 출연계획

○ 출연금액: 8,250천원(2019년 제1회 추경시 예산 확보)

□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

- O 지역진흥시책 기획·조사·연구에 따른 지자체의 기초자료 활용가능
- 재단 출연금 지원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가능
 - 재단 운영 온·오프라인 홍보매체 무상이용 또는 우선권 가능
 - 지역 자원 활용방안 및 축제효과분석 컨설팅 수수료 보조 등

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

- KBS "6시 내고향" 방송제작비 50%(5백만원) 지원
- 정부서울청사 및 지자체 보유 전광판 표출비용 무료지원
- 내고향 갤러리, 상설직판장(3,7,9호선 고속터미널역) 우선 이용권 부여 등

□ 충남도내 관련 조례 제정 현황(2019. 2월 현재)

- 조례제정(13): 충청남도, 공주시, 보령시, 서산시, **논산시**, 계룡시, 금산군, 부여군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
- 조례 미제정(3): 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

참고

관련 법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논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

제2조(재정지원) 논산시장은 한국지역진홍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